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권유재

I.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성립
-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재산권 일반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함
- 피라미드 금융사기와 같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임
- 유사금융업체들이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규제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몇 배나 높은 고금리, 고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체계적이지 못한 경영과 임직원의 횡령사고 등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자주 발생함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에 대하여 적절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유사수신행위범위반칙 관련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6	①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	5년 ↓ 징역 (5,000만 원 ↓ 벌금)
	②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4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2년 ↓ 징역 (2,000만 원 ↓ 벌금)
§ 444 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	5년 ↓ 징역 (2억 원 ↓ 벌금)	
§ 58①	§ 13 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	7년 ↓ 징역 (2억 원 ↓ or 거래대금 총액 3배가 2억 초과시 거래대금 총액 3배)
	§ 24 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등 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 포함
 - 유사수신행위법에 관한 죄의 기본 범죄임
 - 실무상 다른 범죄의 기준이 되므로 양형기준 설정 필요
-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2항 ⇨ 제외
 - 범죄발생빈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로서 통계에 기초한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이 곤란함
- 자본시장법위반범죄 ⇨ 제외
 -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 금지는 원금 보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규율하려는 것.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 등은 집합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두 죄의 적용 단계 및 규율 대상이 다름
- 방문판매법위반범죄 ⇨ 제외
 - 유사수신행위범죄와 행위태양, 보호법익이 다름. 외형상의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묶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향후 별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

3.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Ⅲ. 범죄유형 분류

1. 유형분류 검토

- 유사수신행위범위범죄는 금융거래안전과 금융거래주체의 재산권 일반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음
- 조직 내 피고인의 지위, 유사수신행위의 규모(투자자 수, 투자받은 횟수, 투자원금 총액), 약정이자(수익)율,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 등이 양형에 유의미한 인자로 분석되므로, 조직가담 정도와 투자규모가 유사수신행위범위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려요소라고 할 것임
- 유사수신행위범죄는 다수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조직적·전문적인 범죄사례가 많은바, 조직적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실제 양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사기죄나 공문서 위·변조죄와 같이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 있음
- 「조직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범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함
- 「비조직적 범행」은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의미함

2. 최종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2	조직적 범행			

IV. 형량범위 검토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 법정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2. 형량범위 검토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 선고내역

단위: 명, %

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수	67	372	439
	비율	15.3	84.7	100.0

▣ 형량분포

단위: 명, %

법조		형량(월)														전체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42	48	
유사수신 행위법 제6조 제1항	수	22	4	91	93	102	76	1	3	31	10	2	2	1	1	439
	비율	5.0	0.9	20.7	21.2	23.2	17.3	0.2	0.7	7.1	2.3	0.5	0.5	0.2	0.2	100.0

▣ 비조직적·조직적 행위 건수 및 평균형량

구 분		형량(월)														전체
		4	5	6	8	10	12	14	16	18	24	30	36	42	48	
비조직적	수	5	1	17	12	10	9	0	1	2	0	0	0	0	0	57
	비율	8.7	1.7	29.8	21	17.5	15.7	0	1.7	3.5	0	0	0	0	0	100.0
조직적	수	18	3	74	81	92	66	1	2	29	10	2	2	1	1	382
	비율	4.4	0.7	19.3	21.2	24	17.5	0.2	0.5	7.5	2.6	0.5	0.5	0.2	0.2	100.0

2) 형량범위 제안(비조직적 범행)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에 대체로 부합함. 선고형량 중 94.8%가 기본 영역에 포섭됨
-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18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2년으로 설정

3) 형량범위 제안(조직적 범행)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에 대체로 부합함. 선고형량 중 90.9%가 기본 영역에 포섭됨
-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3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하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 상한은 4년으로 설정

3. 최종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회복 ○ 일반적 수사협조 	<p>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사수신행위범위반죄에서는 다수 공범이 관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 그중 주범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칠 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소극적 공범의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 차이가 큼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에는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가능성을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가담

- 유사수신행위 범죄에는 최하위의 영업사원이나 경리,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 업무에만 가담한 공범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와 같이 가담 정도

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영역에 포섭될 수 있도록 특별감경요소를 설정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보호범의에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이라는 사회적 범의 뿐 아니라 ‘선량한 거래자 보호’라는 개인적 범의도 포함되고, 투자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은 유사수신행위범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 중 하나임

- 양형인자의 정의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2) 특별가중인자

-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유사수신행위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므로, 수신액이 수백,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행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큰 경우
 -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3) 일반감경인자

-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범위반죄에서는 대체로 범죄수익이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양형실무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이득액의 다과가 가중적 또는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 ▣ 일반적 수사협조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회복

4) 일반가중인자

-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광고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도박장소 개설,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대부업범위반 등 유사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함

-
- 양형인자의 정의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이득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 여부를 양형에서 고려함
 -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행성·게임물, 대부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죄군에 반영된 인자임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장부를 폐기하는 등의 사례 있음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V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의 양형인자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함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

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는 양형인자표상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나, 집행유예기준에 있어서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 대응하여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그밖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음